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며, 시험결과와 광고 등 금지 규제를 폐지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민원 처리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 및 관련고시 소관 부서 변경에 따른 사항 등을 준용하여 민원 혼란을 방지(안 제4조제1항)

- 1 -

- 각종 검사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납부하고 전자인증기로 날인하여 확인하는 등 징수방법을 민원 편의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안 제4조제2항)
-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품의 시험결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성적서 전문을 기재하되 성적서의 위조 및 기타 우리 시를 이용한 광고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9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3, 팩스 032-440-8764, 이메일 hy01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험용 검체소용량”을 “시험용 검체소요량”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으로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고시한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을 삭제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신설하며,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에서 정한 수수료액표”를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와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수입증지(이하“수입증지”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하며”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납부하고 제3조제1항의 신청서에 전자인증기로 날인하여 확인하며”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당해 출장공무원”을 “그 출장공무원”으로 하고, “실비를 수입증지로”를 “실비는 동조 제2항의 납부 방식으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를 “지방자치단체가”로 하며, “인정되는 자로서”를 “인정될 시,”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식품, 의약품 및 환경오염물질, 지하수 등)”을 삭제하고, 제2호 중 “법정전염병”을 “법정감염병”으로 하고 제4호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지하수법」 제20조에 의한 먹는물의 정기적인 검사의 경우”를 “「지하수법」 제20조에 의한 정기검사 중 상수도 미보

- 3 -

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로 하며, 제6호를 신설하여 “그 밖에 시장이 공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험·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액을 감면(먹는물에 한함)할 수 있다.”를 “학교 및 군부대, 경찰에서 먹는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동항 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한다.

제9조(“시험결과의 광고등 금지”)를 제9조(“시험결과의 광고”)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삭제하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자가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인천시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과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험용 검체의뢰 소요량 및 시험처리기간

(제3조제1항 관련)

시험종류	처리기간	시험용 검체소요량
1. 의약품 등 가. 민원 나. 단일제제 다. 복합제제 라. 무균, 미생물시험	15일 40일 70일 40일	· 포장단위 2개 이상 · 정제 100정 이상 · 액제 500g(mL) 이상
2. 식품 등 가. 식품	16일	· 이화학검사 항목 식품 : 포장단위(300g이상) 2개 이상 (이물, 방사능 검사, 유통처리제품의 경우 1kg 이상) · 미생물검사 항목 식품 : 포장단위(100g이상) 2개 이상 (세균발육 3개 이상, n5항목 식품의 경우 5개 이상)
나. 식품첨가물	16일	· 고체 : 200g, 액체 : 500g(mL)
다. 기구·용기·포장 및 위생용품	16일	· 기구·용기 : 포장단위 6개, 포장 1m ² 이상 · 물수건, 물종이류 : 6개(장) 이상 · 기타위생용품(1회용 물컵, 1회용 젓가락 등) : 1set · 세척제, 행균보조제 : 포장단위(300g이상) 2개
라.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10일	· 곡류 및 채소류, 기타 농산물 2kg 이상, 과실류 3kg 이상
3. 냉각담수 등	12일	· 1L 이상
4. 임상학적 미생물검사	10일	· 대변 5g · 소변 20mL · 혈액 5mL
5. 수질관계 먹는물 등 가. 15항목 이하(유기인 제외)	10일	· 2L 이상
나. 전 항목	18일	· 4L 이상
다. 지하수검사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15일	· 2L 이상
6. 유류 중 유황함유량 검사	15일	· 200mL 이상
7. 폐기물 용출시험 가. 11항목	17일	· 500g 이상
나. 8항목	14일	
8. 토양오염도 검사	20일	· 500g 이상
9. 축산물검사 가. 식육 및 포장육	17일	* 미생물검사 제품은 6개(총 중량 800g(mL)) 이상 · 500g
나. 원유		· 500mL(농가별 채취량 20mL)
다. 식용란		· 20개
라. 식육가공품		· 500g(mL)
마. 유가공품		· 500g(mL)
바. 알가공품		· 200g(mL)
10. 가축질병검사 가. 병성감정	17일	· 1점(부검 1두) 이상
나. 혈청검사		· 1두(닭 5수) 이상
비고		
1.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시험종류에 대하여는 유사종목에 준함.		
2. 위 표의 검체소요량은 1회 시험에 소요되는 양으로 필요 시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5 -

[별표 2]

시험성적서 교부 등 수수료

구 분	수수료	비 고
1. 시험성적서 교부 등 가. 시험성적서 사본 1통 나. 외국어번역본 1통	500원 1,000원	
2. 시험 등 레지오넬라 검사	41,400원	

- 6 -

(별지 제1호서식)

시 험 의 의 의 서							
검 체 명	시험목적	제조일자 (유통기한)	검체유형	검사항목	검체수량	수수료	비 고

상기 검체를 시험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자 주 소 :
업소명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전 화 :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

※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납부하시고 신청서에 전자인증기로 날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6mm×249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호서식)

(보관용) (의뢰자용)

번호 :

시험의뢰접수증	
성 명	(통수 :)
수수료	원정
	년 월 일
처 리 기 간	※ 시험상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귀하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번호 :

시험의뢰접수증	
성 명	(통수 :)
수수료	원정
	년 월 일
처 리 기 간	※ 시험상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귀하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103mm×149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시 험 성 적 서

검 체 명

시험항목

의 퇴 자

접수년월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우리 원에 제출한 검체에 대하여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 적

년 월 일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176mm×249mm(신문용지 54g/㎡)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는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의 <u>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운영에</u> ----- ----- -----.
제3조(검사·시험의뢰) ①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 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별표1에 정한 시험용 <u>검체</u> <u>소용량</u> 을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서·공공단체에서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제3조(검사·시험의뢰) ① ----- ----- ----- ----- ----- <u>검체</u> <u>소용량</u>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u>검사·시험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국립수의과</u>	제4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u>검사·시험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 「가축전</u>

학검역원장이 고시한 「축산물 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과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등에서 정한 수수료액표에 의하며 동 규정에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은 동규정의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시험을 의뢰할 때에 <u>인천광역시수입증지(이하"수입증지"라 한다.)</u>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 ③ 검사·시험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u>당해 출장공무원의</u>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실비를 수입증지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6조(수수료 감면) ① 국가기관이나 <u>공공단체 또는 개인이</u> 행정정책상 필요한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에	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과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와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의한다. ② ----- -----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납부하고 제3조제1항의 신청서에 전자인증기로 날인하여 확인하며 --. ③ ----- ----- 그 출장공무원의----- ----- 실비는 동조 제2항의 납부 방식으로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수수료 감면) ① ----- ---- 지방자치단체가 ----- ----- ----- 인정될 신 ----- -----
--	---

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단속 및 정기·수시적인 검사의 <u>경우(식품, 의약품 및 환경오염물질, 지하수등)</u> 2. <u>법정전염병예방에</u> 필요한 경우 3. (생략) 4.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지하수법」 제20조에 의한 먹는물의 정기적인 검사의 경우 5. (생략) <신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험·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액을 감면(먹는물에 한함)할 수 있다. 1. 50퍼센트를 감액하는 경우 : <u>학교 및 군부대, 경찰에서</u> 의뢰하는 경우 2. 20퍼센트를 감액하는 경우 : <u>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u> 중 제1항제4호 이외의 경우 제9조(시험결과와 광고등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결	-----. 1. ----- ---- 경우 2. <u>법정감염병예방</u>----- -- 3. (현행과 같음) 4. 「지하수법」 제20조에 의한 <u>정기검사 중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u> <u>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u>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u>시장이 공익상 필요</u>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군부대 및 경찰서에 서 먹는물 수질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제9조(시험결과와 광고) ①제3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자가 검
--	--

<u>과는 시험의외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 포장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다.</u> <u><신 설></u>	<u>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서어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인철시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u>
<u>제10조(성적원본의 말소) ① 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u>	<u>제10조(성적원본의 말소) ①----</u> ----- ----- ----- 따라 ----- ----- ----- -----

【붙임 2】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 ○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 제3조(시험·검사의 구분) 및 제8조(수수료) ☐ 식품위생법 ○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12-128호], [식약처 고시 제2013-261호] ○ 제31조(자가품질 검사 의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지하수법 ○ 제20조(수질검사 등) 및 제33조(수수료)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46조(수수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제45조의2(수수료 적용대상 등)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미등록 행정규제 등록 요구 (공문) ○ 규제등록서 ☐ 환경 중 레지오넬라 표준분석법 공고
관련법규 정비대상	
특이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 정부조직법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3조(시험·검사의 구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6.>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에 관한 시험·검사
2.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에 관한 시험·검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한외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시험·검사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기능성 성분 및 원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시험·검사
5.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른 세척제, 그 밖의 위생용품에 관한 시험·검사
6.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에 관한 시험·검사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시험·검사 대상물에

- 15 -

관한 시험·검사

제8조(수수료) ① 제4조에 따라 시험·검사를 의뢰하려는 자와 제7조에 따라 시험·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제출금 받으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5.1.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의약품 등의 품질관리 또는 단속을 위하여 의뢰하는 시험·검사, 그 밖에 안전성 또는 위해평가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검사
2.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압류하여 의뢰한 식품·의약품 등에 관한 시험·검사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 16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28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00호, 2012. 9.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제 1, 2, 3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미생물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n , c , m , M)는 다음과 같다.

(1) n : 검사하기 위한 시료의 수

(2) c : 최대허용시료수, 허용기준치(m)를 초과하고 최대허용한계치(M) 이하인 시료의 수로서 결과가 m 을 초과하고 M 이하인 시료의 수가 c 이하일 경우에는 적합으로 판정

(3) m : 미생물 허용기준치로서 결과가 모두 m 이하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

- 17 -

(4) M : 미생물 최대허용한계치로서 결과가 하나라도 M 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적합으로 판정

※ m , M 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1 g 또는 1 mL 당의 집락수(CFU)이다.

제 5, 19, 19-4, 5), (7), (8) 및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대장균군 : $n=5$, $c=0$, $m=0$

(8) 세균수 : $n=5$, $c=1$, $m=10$, $M=100$ (액상제품에 한한다.)

(9) 엔테로박터 사카자키[Enterobacter sakazakii(Cronobacter spp.)] : $n=5$, $c=0$, $m=0$ (생후 6개월 미만의 기타 영·유아식 중 분말제품에 한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261호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233호, 2013. 11.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3년 12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바. 식품 중 미생물 기준·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 [제 3, 3, 1) 및 2), 제 5, 2, 5), (6), 3, 5), (7), 11, 5) (6) 및 (7), 18-1, 5), (6), 19-4, 5), (6), 21-5, 5), (7) 및 6), (7), 21-6, 5), (3) 및 (4), 25, 5), (1), (2) 및 (6), 6), (6), 28, 5), (2), 29-1, 5), (2), 29-18, 5), (2), (4) 및 (7)]

1) 미생물의 특성상 제품 중 오염이 균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시료를 검사하여 판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미국, EU 등 제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기준·규격 도입 필요

2) 미생물 기준·규격에 통계적 개념(이균법(n , c , m) 및 삼균법(n , c , m , M))을 도입

3)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가 확보됨에 따라 식품산업활성, 국민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①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수질검사의 항목·기준·절차 및 검사전문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3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검사·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시장·군수·구청장(제3호의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내야 한다.

1.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행위의 허가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6. 제29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

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의2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허가·검사·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제1항제3호의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의뢰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신청자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수수료 적용대상 등)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성감정 수수료

[별표 17] <신설 2012.2.8>

병성감정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검사항목	기준	수수료	비고
1. 부검	1두	2,000원 ~ 40,000원	소: 40,000원 돼지: 30,000원 개: 30,000원 닭: 2,000원
2. 혈액검사	1점	3,000원	
3. 혈청화학검사	1점	10,000원	

- 21 -

4. 새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시험	1점	2,000원	
5. 분변(糞便)내 기생충 검사	1점	3,000원	
6. 병리조직검사	1점	5,000원	
7. 전자현미경검사	1점	5,000원	
8. 원유성분검사(5종)(지방·단백질·당·체세포·요소태질소(MUN))	1점	2,000원	
9. 유산(流産)관련 질병검사	1점	30,000원	
10. 항원검사(PCR)	1점	20,000원	
11. 항원검사(RT-PCR)	1점	25,000원	

비고: 1. 제1호의 수수료는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검사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임.

2. 부검신청한 축종 중 말·당나귀·노쇠·사슴은 소, 양은 돼지, 고양이·토끼는 개, 칠면조·오리·거위·타조·꿀벌은 닭에 준하는 수수료를 적용함.

2. 별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혈청검사 수수료

[별표 18] <신설 2012.2.8>

혈청검사 수수료(제45조의2 관련)

구분	질병명	검사방법	기준	수수료
소	우역	효소면역법	1두	4,500원
		혈청중화시험	1두	4,200원
	우패역	효소면역법	1두	6,000원
		LPB-효소면역법	1두	6,200원
		3ABC-효소면역법	1두	8,100원
		혈청중화시험	1두	4,200원
	구제역	항체간이진단검사	1두	10,000원
		효소면역법	1두	5,300원
		혈청응집반응법	1두	2,400원
		효소면역법	1두	4,600원
	결핵병	효소면역법	1두	4,600원
	소전염성비기관염	혈청중화시험	1두	4,200원
	타이레리아	간접형광항체법	1두	4,400원
	바베시아병	간접형광항체법	1두	4,400원
	소류코시스	면역침강반응법	1두	4,700원
	소유혈열	혈청중화시험	1두	4,200원
	소아까바네병	혈청중화시험	1두	4,200원
	소이바라끼병	혈청중화시험	1두	4,800원
	소캄필로박터감염증	시험관응집반응법	1두	5,800원
	소렙토스피라병	현미경용균반응법	1두	4,900원
	소바이러스성설사병	혈청중화시험	1두	4,200원
	소과립인플루엔자	혈청중화시험	1두	4,200원
	소췌장병	혈청중화시험	1두	4,200원
	소아이노바이러스병	혈청중화시험	1두	4,200원
	소네오스포라병	간접형광항체법	1두	4,000원
	소합포체성페렴	혈청중화시험	1두	4,200원
돼지	구제역	LPB-효소면역법	1두	6,200원
		항체간이진단검사	1두	10,000원
	아프리카돼지열병	효소면역법	1두	4,500원

- 23 -

	돼지열병	효소면역법	1두	4,200원
	돼지수포병	효소면역법	1두	4,500원
	돼지오제스키병	혈청중화시험	1두	4,800원
		간이진단킷트검사	1두	2,600원
		감별진단킷트검사 (항체효소면역법)	1두	4,700원
	돼지전염성위장염	혈청중화시험	1두	4,200원
	돼지단독	발육응집반응법	1두	5,800원
	돼지일본뇌염	혈구응집억제반응법	1두	4,000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간접형광항체법	1두	4,000원
		효소면역법	1두	8,700원
	돼지위축성비염	혈청응집반응법	1두	2,400원
	돼지유행성설사	혈청중화시험	1두	4,200원
	돼지파보바이러스병	혈구응집억제반응법	1두	4,000원
	돼지뇌심근염	혈구응집억제반응법	1두	4,000원
	돼지인플루엔자	혈구응집억제반응법	1두	4,000원
	돼지로타바이러스병	혈청중화시험	1두	4,800원
	돼지췌코바이러스병	간접형광항체법	1두	4,000원
	돼지호흡기코로나바이러스병	효소면역법	1두	6,500원
	돼지마이코플라즈마병	효소면역법	1두	4,600원
	돼지파스튜렐라증	효소면역법	1두	4,600원
	돼지홍막페렴	효소면역법	1두	4,600원
	돼지게타바이러스병	혈구응집억제반응법	1두	4,600원
닭	뉴캐슬병	혈구응집억제반응법	5수	16,300원
		효소면역법	5수	18,300원
		효소면역법	5수	18,800원
	조류인플루엔자	혈구응집억제반응법	5수	17,300원
		완전겔침강반응법	5수	9,900원
	추백리	전혈(혈청)응집반응법	5수	10,000원
	가금티프스	전혈(혈청)응집반응법	5수	10,000원
	닭마이코플라즈마병	혈청응집반응법	5수	11,000원
	닭뇌척수염	효소면역법	5수	18,600원
	닭전염성기관지염	혈구응집억제반응법	5수	19,800원

- 24 -

		효소면역법	5수	18,300원
	담전염성F낭병	한천겔침강반응법	5수	9,700원
		효소면역법	5수	18,500원
	담산관저하증	혈구응집억제반응법	5수	16,800원
	담전염성빈혈	효소면역법	5수	18,800원
그 밖의 가족	복소플라즈마병	LATEX응집반응법	1두	3,500원
	광견병	효소면역증화실험	1두	10,000원
		형광항체증화시험	1두	55,000원
	수포성구내염	효소면역법	1두	5,300원
	아프리카마역	효소면역법	1두	5,300원
	개파보바이러스감염증	혈구응집억제반응법	1두	4,000원
	개브루셀라병	혈청응집반응법	1두	2,400원
□ 비고 1. 위 표에서 정하고 있는 혈청검사대상 질병외의 질병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당해 질병과 가장 유사한 질병의 검사방법 수수료를 적용한다. 2. 같은 질병에 대하여 둘 이상의 검사방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검사방법 중 높은 수수료를 적용한다. 3. 닭의 수수료는 기준수(5수)를 단위로 하여 산정한다. 예) 뉴캐슬병/효소면역법 검사: 1 ~ 5수는 18,300원, 6 ~ 10수는 36,600원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4.2.19>

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제1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관련)

- 무상 채취수거 대상
 - 법 제12조, 법 제15조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축산물
 - 법 제38조에 따라 압류 또는 수거폐기하여야 하는 축산물
 - 식중독인수공통전염병발생 등 공중위생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원인규명역학조사를 목적으로 검사하는 축산물
- 채취(수거)량 기준
 - 축산물

축산물의 종류	채취·수거량(단위)	비 고
식 육 · 포 장 육	500(g)	
원 유	500(ml)	농가별 채취량은 20ml
식 용 관	20(개)	
식 육 가 공 품	500(g, ml)	
유 가 공 품	500(g, ml)	
알 가 공 품	200(g, ml)	

- 비 고
 -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 검사에 필요한 시료재로는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채취하되, 검사시료의 최소포장단위가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사시료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 검사항목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채취수거량을 초과할 수 있으며, 검사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 2 이상의 검사시료를 채취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파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 이어야 한다.
 - 미생물검사를 위한 식육의 검사시료는 표면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채취할 수 있다.
 -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통조림 및 데트르트 축산물은 최소한 6개 또는 800(g, ml) 이상을 수거하여야 한다.
 - 채취(수거)대상 축산물이 채취(수거)량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채취(수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미등록 행정규제 등록 요구

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치법규상 행정규제에 대하여 규제등록을 요구하오니, 해당 부서에서는 규제등록서를 2014.7.25.(금)한 제출바랍니다.

2. 아울러, 규제사무목록 및 등록내용은 시홈페이지 및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공표되고 있으니, 기등록 행정규제에 대하여도 규제등록서 내용을 확인하여 수정사항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법령

- (법 제3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법 제6조)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법 시행령 제5조)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출요구사항

- 27 -

제출대상	제출서식	제출대상 및 작성 참고사항	제출기한 및 제출처
2014.7.20.기준 미등록 행정규제	(신규작성) 규제등록서	·제출대상 ① 불임(인천광역시 등록규제사무) 누락등록대상 ② 부서 추가 누락등록대상 ·작성서식 : 불임2(규제등록서)	'14.7.25.(금)한, 규제개혁추진단
기등록규제 수정사항	(기작성) 규제등록서	·제출대상 : 규제의 명칭, 법적근거, 규제내용 등 수정사항이 있는 등록규제사무 ·작성서식 : 불임3(부서별 규제등록서내 수정사항을 붉은색으로 수정) ※ 비규제 또는 상위법령 단순이기·제규정은 등록제외대상으로 확인 수정대상에서 제외	

※ 감축(폐지·완화)대상 기·누락 등록규제 자치법규 개정추진 (2014.10월까지)

- 불임 1. 인천광역시 등록규제사무(누락등록대상 목록 포함) 1부.
2. 규제등록서 작성서식 1부.
3. 부서별 규제등록서 1부.
4. 안전행정부 2014년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1부(첨부용량 한계로 별도 송부). 끝.

인천광역시장

수신자 시 분청,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전체부서), 의회사무처

주무관

규제개혁추진 전결 2014. 7. 21.
단장

협조자

시행 규제개혁추진단-2097 (2014. 7. 21.) 접수 총무과-6900 (2014. 8. 6.)

우 405-835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8 / http://incheon.go.kr

전화번호 032-458-7283 팩스번호 032-440-8624 / rhh2002@korea.kr / 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 28 -

규 제 등 록 서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2013-10-31	
시험, 검사결과와 광고 등 금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부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제9조			
보건위생		3호 / 금지(부작위)	
자치사무	2011-07-25	누락규제	
2011-07-25		미설정	
○ 시험, 검사 결과의 판매 광고와 상업적 이용을 막고자 함			
규제내용	○ 시험결과와 목적의 사용 금지 ○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 금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록이후 변동경과			

- 29 -

□ 환경 중 레지오넬라 표준분석법 공고(국립환경과학원 제2013-491호)

환경 중 레지오넬라에 의한 질병을 예방하고자, 전국 환경 및 보건 관계자의 이해를 증진하고,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효율적이고 통일된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시료 중 레지오넬라에 대한 표준분석법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환경 중 레지오넬라 표준분석법 공고

□ 배경 및 목적

- 수인성페렴 및 폰티악열병의 원인체인 레지오넬라(Legionella)는 감염병 예방법에 3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2000년 질병관리본부)
 - 노출경로는 자연환경을 비롯해 주로 급배수관망, 물놀이 용수, 온수 및 냉방용수 등 aerosol 형태로 흡입되며 낮은 농도로도 감염
- 전국 지자체 환경 및 보건담당 부서의 이해를 도와 환경오염을 통해 레지오넬라 질병발생을 적절히 감시하고 예방하여 환경성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다양한 환경시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전처리 방법

- 30 -

- 레지오넬라 배양 및 결과 확인방법
- 부록 II 환경 중 레지오넬라 분석 수수료 산출

환경 중 레지오넬라 표준분석법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제2013-491호)

- 직접 재료비만 산출

	직접재료비 항목	사용량	단가	금액	비고
시료채취	시료채취 통	1개	630	630	
시료전처리	membrane filter	1매	2,280	2,280	
	conical tube	1개	198	198	
배양	Legionella agar base	2.96g	1,506	4,458	
	GVPC supplement	0.1	10,210	1,021	
	BCYE growth supplement	0.1	60,000	6,000	
	petri dish	4개	82	328	
유전자분석	PCR mix	5반응	774	3,096	
	Priemers	4 pmol	300	1,200	
	Agarose gel	0.5g	3,340	1,670	
	DNA marker	5 ul	158	790	
	PCR purification kit	3시료	990	2,970	
	유전자서열분석	2개	8,000	16,000	
기타소모품	microcentrifuge tube	2개	29	58	
	micropipette tip(1,000ul)	4개	14	56	
	micropipette tip(200ul)	4개	13	52	
	micropipette tip(20ul)	2개	78	156	
	micropipette tip(10ul)	6개	78	468	
합계				41,440	

타 시·도 수수료 현황

(레지오넬라균 : 1항목)

구 분	수수료(단위 : 원)	비고
인천광역시	15,000	
서울특별시	40,000	
부산광역시	41,400	
대구광역시	41,400	
대전광역시	41,400	
광주광역시	40,000	
울산광역시	40,000	
경 기 도	40,000	
충 청 남 도	41,400	
충 청 북 도	41,400	
전 라 남 도	40,000	
전 라 북 도	41,400	
경 상 남 도	41,400	
경 상 북 도	41,400	
강 원 도	28,100	
제 주 도	15,000	

- 33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환경 중 레지오넬라 표준분석법 공고(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제2013-491호)에 의한 레지오넬라 검사관련 수수료 인상에 대한 세입예산 증액 → (안 별표2)

2. 미 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레지오넬라 검사수수료 인상에 따른 예상 세입증액분은 연간 평균 2,112천 원으로 1억원 미만임.

(단위 : 천원)

년도	의뢰건수	수수료 (15,000원)	수수료인상시 (41,400원)	차액
2015년	85건	1,275,000	3,519,000	2,244,000
2014년	64건	960,000	2,649,600	1,689,600
2013년	70건	1,050,000	2,898,000	1,848,000
2012년	90건	1,350,000	3,726,000	2,376,000

4. 작성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 34 -